

- 도내 연구자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연구 생태계 조성 -
『2022년 경기도형 연구자 중심의 R&D사업』 2차년도 지원대상 모집공고

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는 다양한 연구기반에서의 연구과제 발굴과 지역 인재육성, 연구인력의 연구역량 강화와 성장 지원을 위한 『2022년 경기도형 연구자 중심의 R&D 지원사업』 2차년도 지원대상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2022년 4월 13일
경기도지사·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

1 사업 개요

- 사업목적 : 연구자 중심의 연구로 연구성과 및 연구역량 강화
- 사업명 : 2022년 경기도형 연구자 중심의 R&D 지원사업(2차년도)
- 연구범위 : [부록]산업기술분류표 기준 소분야
- 전담기관 :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
- 지원기간 : 1년
- 지원규모 : 5.6억원/년 (10과제 지원)

2 세부 지원내용

- 지원내용 : 연구자(개인 또는 팀)가 연구과제 수행에 필요한 직접비* 및 기술시장분석 컨설팅 지원

*시제품 제작비, 시험분석비, 연구활동비, 연구수당

지원내용	지원금	기간	지원과제수	비고
연구과제 수행비	50백만원/년 이내	1년	10과제 이내	간접비(지원비 10%, 연구지원기관 귀속)포함
기술-시장분석 컨설팅	20백만원/과제 이내	3개월 내외	3과제 이내 (우수과제)	전문기관을 통한 지원

<세부 지원내역>

구분		지원항목
연구과제 수행비 (직접비)	시제품 제작비	시약 및 재료비, 시제품 제작비, 시험분석비
	연구활동비	여비, 수용비 및 수수료, 교육세미나 참가비, 기술정보 수집비, 전문가 활용(자문)비, 지식재산권 출원비, 회의비 등
	연구수당	1인 : 직접비 10%이내, 2인 : 직접비 15%이내, 3인 : 직접비 20%이내
간접비		지원금의 10% ※ 연구지원기관 귀속

□ 참여조건

< 연구자 >

- ① 경기도에 주소지가 있으며,
- ② 연구과제 수행이 가능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고,
- ③ 도내 소재한 연구지원기관* 소속 연구원(개인 또는 팀)

* 연구지원기관은 연구자에게 멘토링, 연구시설, 기타인력 등 지원

연구자	학력조건	주소지	비고
개인(1인)	석사이상	경기도	-
팀(3인이하)	석사이상 +학사이상	경기도+기타	단, 팀내 1인 이상은 반드시 경기도내 주소지와 석사학위 이상 소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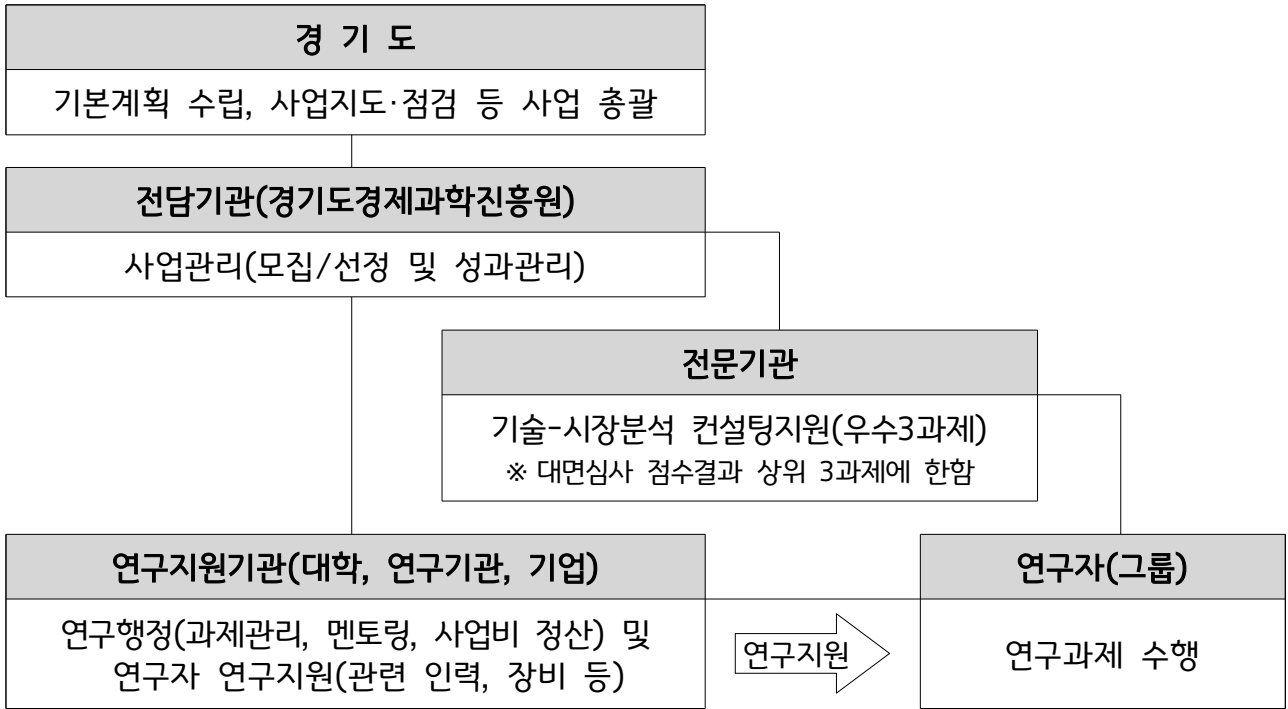
< 연구지원기관 >

연구지원기관	자격조건
기업	- 도내 중소기업으로 「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의2 규정에 해당하는 '기업 부설연구소' 또는 '연구개발전담부서' 인정서 구비 ※ 공고일 현재기준
대학 또는 연구기관	-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대학, 소속 산학협력단 - 국공립연구기관 - 「특정연구기관 육성법」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- 「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정부출연 연구기관 - 「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- 「산업기술혁신촉진법」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및 「민법」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업기술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

3

추진체계 및 절차

□ 추진체계



※기술-시장분석 컨설팅 지원은 과제 착수 후 전담기관에서 별도 진행예정

□ 추진절차

구 분	내 용	비 고
공모/접수	이지비즈(egbiz.or.kr)를 통해 공모	경과원
선정심사	(1차심사) 서면심사위원회	심사위원 7인
	(2차심사) 대면심사위원회 ※ 연구책임자가 직접발표(필수)	심사위원 7인
결과통보	심사결과 통보/연구개발계획서 수정	경과원→연구지원기관
협약체결	지원협약 체결(이행보증보험)	경과원/연구지원기관
최종평가위원회	연구과제 최종평가	심사위원 7인

※대면심사 결과내용(사업비 조정안) 통보에 따라 변경된 연구개발계획서로 지원협약 체결

□ 제출서류(필수)

구분	제출서류	
공통 (소정양식) ※ 서식 임의변경 불가	① 연구개발 계획서 8부(소정양식, 원본1부/사본7부) ※ 원본(1부) 필수포함 ② 과제정보 공개 동의 및 유사 사업 이중 수혜 금지 서약서 1부 ③ 개인정보 제공 조회 동의서 1부 ④ 참여의사 확인서 1부	
연구자 (참여연구자 전부)	① 학위증명서 1부 ※ 학사 이상의 학위 전부 ② 주민등록등본 1부	
연구지원 기관	기업	① 사업자등록증(필수), 공장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(해당 시) 각 1부 ② 국세·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※ 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포함 必 ③ 「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」제14조의2 규정에 해당하는 '기업 부설연구소' 또는 '연구개발전담부서' 인정서 1부. ※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온라인 홈페이지(https://www.rnd.or.kr/)에서 공고일 이후 발급분 제출(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발행 인정 必) ※ 접수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, 미제출 시 실격처리 ④ 기업의 범위만 사실(부존재) 여부 약약서 및 정보내역(서식참조) ⑤ 기타 회사소개서 등(해당 시) 1부.
	대학	① 사업자등록증 1부
	연구기관	① 사업자등록증 1부 ② 설립 허가증 1부 ※ 연구지원기관 자격조건에 해당하는 설립근거 및 법령, 허가기관 확인용 ③ 기관 소개서 1부

□ 제출방법 : 방문제출(권고) 후 이메일(lch@gbsa.or.kr) 발송

※ 우편접수도 가능하나, 서류누락이나 정정(수정)에 필요한 시간할애 불가

※ 방문 제출처 :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45번길 12(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4층)
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4차산업진흥팀

※ 제출(접수)기간 : 2022년 5월 18일(수) 09:00 ~ 5월 20일(금) 16:00까지(도착분에 한함)

※ 제출서류 일체, 이메일 발송 필수(한글파일/스캔본 둘다 함께 제출)

※ 제출서류 중 하나라도 미제출 하거나 접수기간 이후 제출 시 실격처리

구분	지원제외 요건
연구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지원기간 내 타과제 참여율 합이 100%를 초과한 경우(중도 지원취소 가능) ○ 1명의 연구자가 2과제 이상 참여하여 신청한 경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복수참여 불가, 중복참여 시 해당과제 모두 지원제외 ○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○ 병역기피 중에 있거나,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○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및 연구개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
연구지원 기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같은 연구지원기관에서 3과제 이상 신청한 경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기업은 1개 과제에 한함, 해당과제 모두 지원제외 ○ 범위반 사실이 확인된 기업(확약서 서식 참고) ○ 공고일 현재 부도, 법정관리, 휴·폐업 상태인 경우 ○ 연구지원기관과 무관한 제3자가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○ 지원금을 유용하거나, 횡령하는 경우(별도 사업비 계좌로 관리하여야 함) ○ 지원금에 대한 100% 보증을 확약하는 지급이행보증 보험증권을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margin-top: 10px;"> <p>과거 채무불이행 등의 사유가 있는 기업은 필히 서울보증보험 등 보증보험사를 통하여 이행보증보험증권 발행이 가능한지 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, 선정이 되어도 보험증권 미제출시에서는 결격사유로 지원제외 됨</p> </div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국세, 지방세 등 세금을 체납한 경우
공통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공고일 이후 지원기간 내 소재지가 경기도가 아닌(유지곤란) 경우 ○ 연구개발 계획서 등 제출서류가 거짓 또는 허위인 경우 ○ 연구자가 연구지원기관 소속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margin-top: 10px;"> <p>지원(협약)기간 내 소속관계(재직, 재학 등) 유지(연구지원기관 보증)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※ 지원기간이라도 소급 적용하여 협약해약(지원취소) 및 지원금 환수조치</p> </div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연구자와 연구지원기관 소속직원의 인적관계가 6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 등 친족관계 또는 단순 개인적 친분관계인 경우 ○ 연구자 개인 또는 연구지원기관이 관계자가 정부 및 지자체 등 타기관(전담기관 포함)에서 지원 제재대상인 중인 경우 ○ 정해진 기일 내 심사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, 총괄 책임자가 심사에 불참(불응)한 경우 ○ 정당한 사유없이 협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경우 ○ 전담기관에서 시행하는 선정심사, 현장점검, 최종평가 등에 불응한 경우 ○ 제출서류가 허위(거짓) 또는 누락한 경우 ○ 법원, 은행 등 채권집행기관(개인)으로부터 압류(차압)가 진행되는 경우 ○ 기타 경기도지사가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○ 위 사항에 해당할 경우 지원기간 내 또는 이후라도 지원취소 및 지원금 전액(또는 일부) 환수조치 할 수 있음

- 연구자당 1과제 참여가 원칙입니다.(중복 또는 다중신청 불가)
- 연구자와 연구지원기관 간 사전에 충분히 협의 후 연구개발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- 연구자의 연구지원기관 소속은 “정규직, (유기/무기)계약직, 파견직, 인턴직, 파트타임, 재학생” 등을 의미하며, 과제신청 시점부터 과제 종료시까지 연구지원기관에서 해당 연구자의 신분(소속)을 보장하여야 합니다.
- 사업비 기준항목을 정확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.
 - * 연구수당 : 연구자 인원기준(1인 : 직접비의 10%이내, 2인 : 직접비의 15%이내, 3인 : 직접비의 20% 이내 계상)
 - * 간접비 : 지원금의 10% 이내로 계상
- 사업비는 연구지원기관 명의의 사업비 전용계좌와 전용카드로 반드시 사용하셔야 합니다.
- 부가가치세, 관세 등 연구지원기관이 사후환급이나 공제 받는 금액은 집행금액에서 제외함을 원칙으로 하오니 이점을 유념하여 사업비를 산정하시기 바랍니다.
 - * 단, 세무당국이 사후환급 불가함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
- 총사업비를 제외한 연구에 소요되는 간접적 연구지원(장비 등 연구인프라 활용 및 제반 비용)에 필요한 부분은 연구지원기관이 부담하여야 합니다.
- 과제 수행 시 연구자의 과제 참여율(타과제 포함 100% 한도) 관리를 준수(유지)하여야 합니다.
- 지원자격 요건에 이상이 없는 경우, 총괄책임자에게 심사일정을 개별통보 합니다.
 - (통보방법 : 유선전화(또는 문자) 및 이메일) ★ 이메일 관리 주의
- 제출한 제출서류 외 추가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, 연구자와 연구지원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.
- 선정심사 결과에 따른 연구개발 계획서의 수정·보완 요청(사업비 조정요청)에 불응할 경우 지원협약 체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.
- 연구개발 계획서의 기재정보(전화번호, 연락처 등)의 기재오류(또는 수신불능)나 대면심사 참여 불응 시 선정취소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.
- 본 사업은 경기도 또는 전담기관 사정에 따라 취소·연기·변경될 수 있으며,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.(후속사업 진행여부는 道 지원정책에 따라 취소될 수 있음)
- 연구자 및 연구지원기관은 본 사업과 관련한 관계법령(규정)을 준수하여야 하며,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반이나 연구윤리에 어긋날 경우 전적으로 모든 책임을 감수하여야 합니다.
- 본 사업공고의 운영방침 외 사항은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운영요령과 부속 규정에 따르며(첨부 참고), 운영방침이 상충할 경우 본 사업공고문과 운영방침이 우선합니다.
- 본 사업에 참가 신청한 연구자 및 연구지원기관은 본 공고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, 공고내용의 미준수(미숙지)로 인한 불이익과 책임은 연구자와 해당 연구지원기관에게 있습니다.

-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4차산업진흥팀 이철희 책임연구원
(Tel. 031-776-4823 / E-mail : lch@gbsa.or.kr)

참고

선정심사 운영방안

- 선정심사 : 2단계 심사(서류심사 → 공개심사, 주관적 평가)

구분	서면심사	대면심사
진행방식	서면심사위원회	발표심사(과제당 10분 발표 5분 질의응답)
심사자	외부 전문가(심사위원) 총 7인	
심사대상	사업신청(적격) 연구과제	서면심사를 통과한 연구과제
심사일정 (변경가능)	2022. 5. 25.(수)(예정)	2022. 6. 9.(목)~6.10.(금)(예정)
심사지표 (배점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기술의 차별성(30) · 연구과제의 적합성(30) · 목표달성 가능성(40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연구과제의 적정성(25) · 연구과제의 기술성(30) · 연구자 수행역량(20) · 목표달성 가능성(20) · 지역 공헌도(5)
선정기준	심사위원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60점 이상 고득점순(최고·최저 점수 제외)	
선정규모	30과제 내외(3배수 내외)	10과제 이내

- ※ 최종 선정된 연구과제의 지원조건이 미충족 등 협약체결 불가사유 발생 시 후순위 과제(60점 이상)의 연구과제로 협약체결 진행, 적격자 없을 시 재공고
- ※ 대면심사는 별도 사업비 적정심의(검토)를 진행하여 조정된 금액으로 협약체결
- ※ 신청접수 결과 3배수 내외일 경우, 서면절차 생략 가능(대면심사 100%로 선정과제 결정)